

회의록

회의일시	2021.02.04.(목) 13:30~14:3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us)
참석자	신현기(기획처장), 김종호(교수협의회장), 장경훈(총학생회장), 조예희(부총학생회장), 오계수(대학원원우회장)		
불참자	황병삼(노동조합지부장), 김효건(공인회계사)		

회의명	2020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2) 2020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 검토 심사·의결 3)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사·의결 4) 2021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기준(안) 심사·의결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른 본교 대면수업 (활동) 및 방역지침”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함. □ 신현기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간사인 김신용 기획평가팀장의 출장으로 이주명 예산담당자의 성원보고, 오계수 위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 							
	<p>[안건1]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신현기 위원장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하여 기본 방향, 예산액 총괄 현황, 주요 조정사항을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함.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음을 설명함.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20추경예산(2차)</th> <th>'20추경예산(1차)</th> <th>증감(△)액</th> </tr> </thead> <tbody> <tr> <td>세입/세출 총예산액</td> <td>40,531,020</td> <td>41,053,110</td> <td>△522,09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현기 위원장은 이주명 예산담당자에게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2020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의 예산 과목별 변동 세부 내용(예산 과목별 증감현황 및 사유, 법인전입금현황 등)을 설명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안건별로 각각 설명 후 질의응답할 것인지 문의하고 위원들의 요청으로 모든 안건 설명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함. <p>[안건2] 2020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 검토 심사·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명시이월의 목적 및 내용을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함. <p>[안건3]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신현기 위원장이 본예산 편성(안)과 관련하여 기본방향, 예산 	구 분	'20추경예산(2차)	'20추경예산(1차)	증감(△)액	세입/세출 총예산액	40,531,020	41,053,110
구 분	'20추경예산(2차)	'20추경예산(1차)	증감(△)액					
세입/세출 총예산액	40,531,020	41,053,110	△522,090					

액 총괄 현황을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함.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본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음을 설명함.

(단위:천원)

구 분	'21본예산	'20추경예산(2차)	증감(△)액
세입/세출 총예산액	39,119,697	40,531,020	△1,411,323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본예산(안)의 예산 총칙 및 편성의 주요사항을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함. 그리고 “2021회계연도 본예산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의 예산 배정 현황 및 예산 과목별 변동 세부 내용(예산 과목별 증감현황 및 사유)을 설명함.

[안건4] 2021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기준(안) 심사의결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이월금 관련 법령 등을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함. 그리고 2021회계연도 이월금 처리 기준(안)으로 “교육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교육비 또는 장학금 등에 사용”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논의를 요청함.
- 상기에서 설명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함.
- 장경훈 위원은 이월금 처리기준(안)과 관련하여 기획처에서 마련한 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안에 동의하며, 다른 위원들의 이견이 없는 경우 해당 기준을 확정하기를 요청함.
- 장경훈 위원은 2021회계연도 본예산(안)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상화 대응 또는 감축 대응 예산 편성 기준을 질의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등록금회계의 경우 수입의 감소 발생시 등록금회계 전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료가 2020 회계연도 기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축 대응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설명함. 비등록금회계의 경우는 기획처에서 분기별 단위부서 예산 점검 및 예산통제를 실시하여 수입 및 지출 금액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정상화 대응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설명함.
- 장경훈 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2020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지속될 경우 특별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2020회계연도에 지급된 특별장학금의 산정 기준과 2021회계연도에도 그 기준이 유지 또는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2020회계연도에 지급된 특별장학금의 경우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 지역권역별 타대학 특별장학금 기준을 사전 검토하고 학생 대표와의 본교 예산 상황에 따른 적정 기준을 마련 지급하였음을 설명함. 다만, 2020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처음 접한 교원들이 많아 수업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일부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설명함. 2021회계연도는 온라인 수업의 진행이 2020회계연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함.
- 김종호 위원은 학생 정원 언제까지 적용될 예정인지 질의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학생 정원 감축의 경우 2018년 입학정원 감축에 따라 매년 24명씩 감축 적용되어 2021학년도 마지막으로 적용될 예정임을 설명함.
- 장경훈 위원은 총학생회에서 요청한 학생 편의시설 공간 마련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을 문의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총학생회에서 요청한 내용은 학생복지지원팀을 통해 기획처에서 공문 접수한 상태이며, 학생복지지원팀, 시설관리팀과 안전성 확보 등의 논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을 설명함.
- 조예희 위원은 건축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예정인 엘리베이터 교체 건과 관련 각 건물에 적용되는 교체 기준과 건축물관리비 계정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질의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엘리베이터 교체의 경우 설치 후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안전점검에 따라 교체를 해야하며, 2021회계연도의 경우 본관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였음을 설명함. 그리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건적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함. 건축물관리비 계정은 교내외 학교 건물, 시설 등에 페인트 등 도장공사, 강의실 보수 등 각종 공사비용에 사용되는 계정임을 설명함.
- 장경훈 위원은 본예산 편성 후 운영 과정에서 예산 감축으로 세이브 되는 예산이나 여유분의 예산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지원 등에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분기별로 예산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단위부서의 예산은 기획처에서 회수하여 재배정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단위 부서에 검토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 지원을 주관하는 학생복지지원팀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을 설명함. 다만, 학생지원비의 경우 본교 수입의 약 30% 이상을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중 교내외장학금이 매년 약 11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배정 검토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 신현기 위원장은 추가적인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기 안건 외 기타 검토가 필요한 의견이 있는 경우 발언하기를 요청함.
- 장경훈 위원은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예상되므로 학생 보호를 위한 강의실 칸막이 설치 등을 검토해주기를 요청함.
- 신현기 위원장은 추가적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함.
- 이상의 내용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 편성(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기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 위원장의 폐회선언과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

붙 임 : 1. 위원서명지 위원별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앞장에서 이어짐)

2021.02.04.(목)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신현기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02.04.(목)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김중호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02.04.(목)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장경훈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02.04.(목)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조계희 

(앞장에서 이어짐)

2021.02.04.(목)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이제우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02.04.(목)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이주영



2020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 일 시 : 2021.02.04.(목) 13:30~
- 장 소 : Zoom 온라인 화상 회의
- 안 건
 - 1)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 2) 2020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 검토 심사·의결
 - 3)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사·의결
 - 4) 2021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기준(안) 심사·의결



【안건1】 '20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1. 기본 방향

- 단위부서별 수입액 및 지출액 조정
- 단위부서별 예산조정(전용, 반납, 이관 등) 사항 반영
- 법인전입금 예산조정
- 기타 수지 차액에 따른 예산 조정

2. 예산액 총괄

(단위:천원)

구 분	'20추경예산(2차)	'20추경예산(1차)	증감(△)액
세입/세출 총예산액	40,531,020	41,053,110	△522,090

3. 주요 조정사항

- (수입)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조정
- (수입)국고보조금 및 지정기부금 등 조정
- (지출)수지 차액에 따른 예산 조정
- (지출)학부 및 대학원 강사 퇴직금 반영(국고지원)
- (지출)부서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조정(전용, 반납, 이관 등) 반영

4. 계정별 편성 현황

○ 수입

(단위: 천원, %)

계정	추경예산(2차)	추경 1차 대비 비율	추경예산(1차)	비율	증감
총액	40,531,020	98.73	41,053,110	100	△522,090
등록금수입	25,165,206	61.3	25,219,186	61.43	△53,980
전입및기부금수입	11,726,842	28.57	12,140,190	29.57	△413,348
교육부대수입	1,111,300	2.71	1,062,640	2.59	48,660
교육외수입	647,405	1.58	692,327	1.69	△44,922
투자기타자산수입	441,000	1.07	520,000	1.27	△79,000
고정자산매각수입	20,500	0.05	0	0.00	20,500
고정부채입금	0	0	0	0.00	0
전기이월자금	1,418,767	3.46	1,418,767	3.46	0

○ 지출

(단위: 천원, %)

계정	추경예산(2차)	추경 1차 대비 비율	추경예산(1차)	비율	증감
총액	40,531,020	98.73	41,053,110	100	△522,090
보수	18,022,182	43.9	17,928,907	43.67	93,275
관리운영비	7,460,613	18.17	7,016,684	17.09	443,929
연구학생경비	13,193,401	32.14	13,081,806	31.87	111,595
교육외비용	52,211	0.13	52,211	0.13	0
예비비	0	0	1,266,280	3.08	△1,266,280
투자기타자산지출	598,590	1.46	635,430	1.55	△36,840
고정자산매입지출	916,023	2.23	763,792	1.86	152,231
고정부채상환	20,000	0.05	20,000	0.05	0
차기이월자금	268,000	0.65	288,000	0.70	△20,000

【안건2】 '20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 명시이월 검토 심사·의결

○ 명시이월 검토 대상 예산 내역

(단위:천원)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과목	대상금액	사유**
등록금	인사총무팀	급여 및 복리후생사업	복리후생비	90,000	코로나19로 교직원 건강검진 연기
비등록금	대학혁신지원사업(국고)			162,000*	대학혁신지원사업 이월 허용범위내
소계				252,000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실집행률에 따라 결산시점에 명시이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명시이월 대상이라 하더라도 2020회계기간내 집행이 가능하거나 타 목적의 긴급 집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 전용이 발생할 경우 실제 이월되지 않을 수 있음

【안건3】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사 · 의결

1. 기본 방향

- 한세비전 2023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 각종 대학평가 대비 지표 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 전략적 자원 배분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기존 수익사업 점검 및 개선으로 지속성장 동력 확보 및 신규 사업 수주
- 경상비를 제외한 비경직성 경비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2. 예산액 총괄

(단위:천원)

구 분	'21본예산	'20추경예산(2차)	증감(△)액
세입/세출 총예산액	39,119,697	40,531,020	△1,411,323

3. 주요 편성 내역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당기발생	등록금 수입 (단기수강료 포함)	25,108,155	각 전공 및 기관별 사업 예산	
	전입 및 기부금 수입 (전입금수입)	10,539,947 (1,445,372)	보수	16,706,049
	교육부대 수입 (전형료, 대여료 등)	1,592,645	관리운영비 (건축기금) (특정목적기금)	5,549,556 (250,000) (0)
	교육외 수입 (기금예금이자) -기금 재적립	288,950 (288,950)	연구·학생경비 (연구, 장학기금)	12,782,423 (200,000)
	고정부채입금 (임대보증금수입)	88,000	교육외비용	75,627
	소 계(A)	37,617,697	예비비	2,678,431
			고정자산매입지출 (건축기금)	634,501 (300,000)
			고정부채상환 (임대보증금환급)	88,000
			소 계(A)	38,514,587

수 입			지 출		
임의기금인출 수입	임의건축기금	550,000	각38514종 임의기금 적립	기금원금 및 이자 적립(선급법인세 포함)	
	임의연구기금	200,000		건축기금(감가상각,이자)	299,000
	임의장학기금	0		연구기금(이자적립)	14,580
	임의특정목적기금	0		장학기금(이자적립)	1,320
				퇴직기금(이자적립)	1,930
				특정목적기금(이자적립)	280
	소계	750,000		소계	317,110
전기 이월자금	전기이월자금 수입	752,000	차기 이월자금	차기이월자금 (임대보증금 등)	288,000
합 계	소 계(B)	1,502,000	합 계	소 계(B)	605,110
	(A+B)	39,119,697		(A+B)	39,119,697

4. 계정별 편성 현황

○ 수입

(단위: 천원, %)

계정	본예산	추경 2차 대비 비율	추경예산(2차)	비율	증감
총액	39,119,697	96.52	40,531,020	100	△1,411,323
등록금수입	25,108,155	61.95	25,165,206	62.1	△57,051
전입및기부금수입	10,539,947	26	11,726,842	28.94	△1,186,895
교육부대수입	1,592,645	3.93	1,111,300	2.74	481,345
교육외수입	288,950	0.71	647,405	1.6	△358,455
투자기타자산수입	750,000	1.85	441,000	1.09	309,000
고정자산매각수입	0	0	20,500	0.05	△20,500
고정부채입금	88,000	0.22	0	0	88,000
전기이월자금	752,000	1.86	1,418,767	3.50	△666,767

○ 지출

(단위: 천원, %)

계정	본예산	추경 2차 대비 비율	추경예산(2차)	비율	증감
총액	39,119,697	96.52	40,531,020	100	△1,411,323
보수	16,706,049	41.22	18,022,182	44.47	△1,316,133
관리운영비	5,549,556	13.69	7,460,613	18.41	△1,911,057
연구학생경비	12,782,423	31.54	13,193,401	32.55	△410,978
교육외비용	75,627	0.19	52,211	0.13	23,416
예비비	2,678,431	6.61	0	0	2,678,431
투자기타자산지출	317,110	0.78	598,590	1.48	△281,480
고정자산매입지출	634,501	1.57	916,023	2.26	△281,522
고정부채상환	88,000	0.22	20,000	0.05	68,000
차기이월자금	288,000	0.71	268,000	0.66	20,000

【안건4】 '21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기준(안) 심사·의결

1. 이월금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에 따라 당해연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 가능함
-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이월금)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부 이월금 처리 기준 준수 필요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

- ① 결산 시 사고·명사·기타이월의 구분 명확화
- ② 연도별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자금계산서 기준)의 아래 규모 준수(「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및 회계관리 안내」(17.1.17.)
 - '16년 1.7%이내, '17년 1.4%이내, '18년 이후 1.0%이내
 - ※ 적용대상 : 4년제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 기타이월금이 특별한 사유없이 과도하게 증가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 ③ 외부회계감사 시, 이월금에 관한 사항 검토 철저
- ④ 잉여금 처리 원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준수

2. 잉여금 처리 원칙 수립 및 집행 참조

- 잉여금 개념 : '20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과 '21회계연도 본예산서에서의 전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의 차이
 - * 예시 : '20회계연도 결산 차기이월자금(100)-'21회계연도 본예산 전기이월자금(50)=50 = 잉여금(50)
- 잉여금 처리원칙 : '20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 집행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21회계연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자금)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용방안 마련

- '20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3. 이월구분(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구분	내용	사례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금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당년도 자금을 내년에 집행해야 하나, 검수 등이 끝나지 않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이월금
기타이월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	

4. 이월금 처리 기준 및 원칙

- 이월금 처리 기준(안) 검토

구분	내용
기본원칙	교육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교육비 또는 장학금 등에 사용